

1979. 1979. 1979. 1979. 1979. 1979. 1979. 1979.

ICN-CNR 회의록

ICN-CNR. ICN-CNR. ICN-CNR. ICN-CNR. ICN-CNR.

의제 5 : 사업의 의제와 우선순위 승인

Austria의 Miss Friederike Dittrich에 의해 제안되고 Argentina의 Miss Adriana Pecoroff에 의해 재청됨.

“의제, 사업순위를 승인하되 필요에 따라 의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안” 통과

의제 6 : 1977년 5~6월 동경에서 열린 CNR회의록

Israel의 Mrs. Moriah Galili에 의해 제안되고 Denmark의 Mrs. Kirsten Stallknecht에 의해 재청됨.

“1977년 5~6월 동경에서 열린 CNR회의록을 받아들이다는 안” 통과

의제 8 : ICN회원국의 가입신청의 처리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제안되고 Austria의 Miss Friederike Dittrich에 의해 재청됨.

“Cyprus간호협회를 ICN회원국으로 가입시키자는 안” 통과

의제 9.1 : 회장의 보고

Jamaica의 Dr. Mary Jane Seivwright에 의해 제안되고 Germany의 Mrs. Rosemarie Weinrich에 의해 재청됨.

“회장의 보고를 받아들이다는 안” 통과

Australia의 Miss Moira McNair에 의해 제안되고 Canada의 Miss Helen Taylor에 의해 재청됨.

“ICN사무총장 이었던 Miss Barbara Fawkes의 업적을 찬양하기로 하고 CNR의 이름으로 Miss Fawkes에게 감사의 전문을 보내기로 하자는 안” 통과

의제 9.2 : 사무총장의 보고

Liberia의 Ms. Carolyn E. Wilson에 의해 제안되고 Netherlands의 Miss J.M. Th. Van Maanen에 의해 재청됨.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아들이다는 안” 통과

의제 9.3 : 전문사업위원회의 보고

Ireland의 Ms. Hilary Marchant에 의해 제안되고 Japan의 Miss Fumie Kobayashi에 의해 재청됨.

“전문사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다는 안” 통과 (2명기권)

자마이카의 Dr. Mary Jane Seivwright에 의해 제안되고 뉴질랜드의 Miss Joy Motley에 의해 재청됨.

“국제여행의 증가로 유발되는 질병전염의 위험도에 관한 간호원의 책임에 대한 성명서(부록A)를 채택하자는 안” 통과 (1명기권)

알제틴의 Miss Adriana에 의해 제안되고 스페인의 Mrs. Seelie Wickremasinghe에 의해 재청됨.

“기계에 의존한 생명의 유지, 생명의 증진, 유전학적 상담과 이러한 사항에 내포되는 도덕적 딜레마등에 관한 윤리적문제에 대한 전문사업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받아들이다는 안”

통과 (1명 반대, 1명 기권)

Jamaica의 Dr. Mary Jane Seivwright에 의해 제안되고 Western Samoa의 Mrs. Faamanatu Nielsen에 의해 재청됨.

“기계에 의존한 생명의 유지, 생명의 중절, 유전학적 상담과 이러한 사항에 내포되는 도덕적 딜레마등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수정안(부록 B) 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Zambia의 Mrs. Eva Sanderson 에 의해 제안되고 Fiji의 Mrs. Lavenia Kau Padarath에 의해 재청됨.

“전문사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다는 안” 통과

United States의 Mrs. Barbara Nichols에 의해 제안되고 Bahamas의 Mrs. Esmeralda Rutherford에 의해 재청됨.

“전문사업위원회는 의학 및 건강에 관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계속 평가하고 이들이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안” 통과

Israel의 Mrs. Moriah Galili에 의해 제안되고 Switzerland의 Miss Elfriede Schlaeppli에 의해 재청됨.

“전문사업위원회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보고와 현실적인 업적과 노력에 대해 감사하고 전문사업위원회와 의장 Miss Jessie Scott에게 감사의 찬사를 보내자는 안” 통과

의제 10.1 : 1977, 1978년도 ICN의 회계보고

Netherlands의 Miss J.M. Th. van Maanen에 의해 제안되고 Puerto Rico의 Ruth Pérez에 의해 재청됨.

“감사를 필한 ICN의 1977, 1978년도 회계보고를 받아들이다는 안” 통과

의제 10.2 : 1977, 1978년도 FNIF의 회계보고

Kenya의 Mrs. Elizabeth Ngugi에 의해 제안되고 Norway의 Mrs. Martha에 의해 재청됨.

“감사를 필한 FNIF의 1977, 1978년도 회계보고를 받아들이다는 안” 통과

의제 11.3 : ICN 지역회의 주창

Netherlands의 Miss J.M. Th. van Maanen에 의해 제안되고 New Zealand의 Miss Joy Motley에 의해 재청됨.

“ICN의 지역별회의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위원회나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좀 더 연구하도록 이사회에 제안하고 연구결과를 1981년 CNR 회의의 토의자료로 제출하자는 안” 통과 (2명 반대, 3명 기권)

USA의 Mrs. Barbara Nichols에 의해 제안되고 Denmark의 Mrs. Kirsten Stallknecht에 의해 재청됨.

“네덜란드에서 제의한 안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ICN본부와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ICN을 공식지역화하는 것이 조직면과 운영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사회에 회부하여 좀 더 검토하기로 하자는 안” 통과 (1명 반대, 2명 기권)

의제 11.4 : ICN본부의 제네바 유보

Australia의 Miss Moira McNair에 의해 제안되고 New Zealand의 Miss Joy Motley에 의해 재청됨.

“제네바는 정치적, 비정치적 기관을 위한 중요한 국제적 센터로서 계속될 것이며 ICN은 국제사회에 있어 전문간호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국제적 센터 내에 ICN본부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 통과 (1명 기권)

의제 11.5 : 어린이의 권리

USA의 Mrs. Barbara Nichols에 의해 제안되고 Denmark의 Mrs. Kirsten Stallknecht에 의해 재청됨.

해 재청됨.

“어린이권리에 대한 성명서(부록 C)를 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의제 11.6 : 질적인 생활

USA의 Mrs. Barbara Nichols에 의해 제안되고 Zambia의 Mrs. Eva Sanderson에 의해 재청됨.

“질적인 생활에 대한 성명서(부록D)를 수정안 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의제 11.7 : 간호연구의 발전

Netherlands의 Miss J.M.Th. van Maanen에 의해 제안되고 Greece의 Miss Stavroula Papamicrouli에 의해 재청됨.

“본안에 있어서 ICN의 역할을 좀 더 탐구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연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이사회에 제의한다 :

1. 각국 간호협회의 본안에 대한 요구
2. 기금의 모금방안
3. 유용한 연구자원의 활용
4.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자로 은행의 설립
5. 간호에 중점을 둔 국제적 수준의 연구에 관한 정보교환의 강화

USA의 Mrs. Barbara Nichols에 의해 제안되고 Canada의 Miss Helen Taylor에 의해 재청 됨.

“본안에 대한 비덜란드안을 아래안으로 대치 하자는 안 :

간호연구에 대하여 보다 깊이 고려하기로 하고, 이사회는 간호연구에 관한 ICN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아래의 몇가지 의문점을 조사 한다 ; 즉 개발도상국가에게 연구에 관한 훈련 을 어느 한도 증진시키고 제공해 주어야 하는 가, 각국가간에 어느 정도로 공동 연구를 시 행하거나 서로 협조해야 하는가, 연구과정에서 의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로 서

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간호연구영역을 정하며 임상현상별로 또는 직업영역별로 이를 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연구 해서 재조정하게 하고 이의 진행사항을 1981 년도 CNR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는 안” 통과 (2명 기권)

의제 15.1 : Clinical Interest Groups

Austria의 Miss Friederike Dittrich에 의해 제안되고 Trinidad and Tobago의 Mrs. Laurel McDowell에 의해 재청됨.

“간호실무에 있어 임상 전문간호원 그룹에 대한 성명서는 수정안(부록 E)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의제 16 : 간호원에게 영향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검토

Denmark의 Mrs. Kirsten Stalknecht에 의해 제안되고 Finland의 Miss Toini Nousiainen 에 의해 재청됨.

“이사회는 1981년까지 2년동안, 간호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복지를 취급하여, Los Angeles에서 열리는 차기 CNR회의에서 완 전히 논의되고 재검토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 다 나은 전략과 계획이 세워지도록 하며 ;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분과위원회를 두되 ICN본부에 이미 비치된 각종 정보는 앞으로 의 분과위원회 사업에 지침이 될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

분과위원회는 산업분야와 관계된 문제를 파악 하고 이의 해결을 도우므로써 회원국을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ICN의 이러한 활동으 로써 회원국에 ‘자조’ 개념이 확실히 서게 되 도록 하자는 안 : 통과 (2명 기권)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제안되고 Denmark의 Mrs. Kirsten Stalknecht에 의해 재청됨.

“이번 CNR회의에서 이룩된 유용하고도 건설

적인 작업의 결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1981년 L.A.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회의 및 분과토의 일정을 계획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을 이사회에 제의하자는 안” 통과
Australia의 Miss Moira McNair에 의해 제안되고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재청됨.

“ICN이 사용하는 ‘간호원의 보수와 고용조건’이라는 용어를 ‘사회경제적 복지’로 대체하자는 안” 부결

의제 12.1 : 1981년회의의 마크선정

지구를 나타내는 Symbol No.3으로 선정하자는 결의

의제 12.2 : 1981년회의의 주제선정

“Health Care for All: Challenge for Nursing”

의제 12.4 : 1983년 CNR 개최지 및 일자선정

1983년 CNR 개최지는 브라질로 결정

의제 12.5 : 1985년 총회 개최지 및 일자선정

“1985년 총회개최지는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하자는 안” 통과 (1명 반대)
이스라엘이 1985년 총회 개최지로 선정됨.

의제 12.6 : ICN총회 규모

Australia의 Miss Moira McNair에 의해 제안되고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에 의해 재청됨.

“차기총회의 참석자수는 개최국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회원수비율로 배정하자는 안과 각국 간호협회는 이사회가 배당한 최대숫자를 1981년 CNR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안” 부결

New Zealand의 Miss Joy Motley에 의해 제

안되고 Netherlands의 Miss J.M. Th. van Maanen에 의해 재청됨.

“이사회는 할당제에 의해 총회의 참석자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이를 1981년 L.A.의 CNR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는 안” 통과 (8명 반대, 1명 기권)

의제 12.7 : ICN총회 장소

Australia의 Miss Moira McNair에 의해 제안되고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재청됨.

“Brazil에서 열리는 CNR회의후, CNR회의는 총회년을 제외하고는 Geneva에서 개최하자는 안” 부결 (2명 찬성, 1명 기권)

USA의 Mrs. Barbara Nichols에 의해 제안되고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재청됨.

“1985년 ICN총회 이후부터는 ICN총회 주최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나라로 제한하며 총회개최를 유치신청할 때 이를 제시하도록 하자는 안 : 집회장소, 사회적요구, 호텔침대수, 참가자수에 필요한 총회 경비” 부결

의제 15.2 : 각국 간호협회의 회원

Austria의 Miss Friederike Dittrich에 의해 제안되고 한국의 김도임박사에 의해 재청됨.

“ICN은 각국 간호협회 회원의 증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1981년 CNR의 의제로 하며 토의를 위한 문서를 준비하기로 하자는 안” 통과 (1명 반대)

의제 13 : ICN정관과 세칙의 수정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제안되고 Austria의 Miss Friederike Dittrich에 의해 재청됨.

“ICN정관의 제목에서 세칙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안” 통과

Germany의 Mrs. Rosemarie Weinrich에 의해 제안되고 Ireland의 Ms. Hilary Marchant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1 조 2항을 :

‘ICN은 정관 제 7조에 의해 정식으로 가입되고 공식적으로 회원으로 승인된 각국 간호협회의 연합체이며 ICN의 조직과 기능은 국제, 종족, 인종, 성별, 종교적, 정치적 신념 및 사회적 지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자는 안” 통과

Finland의 Miss Toini Nousiainen에 의해 제안되고 Ghana의 Mrs. Edith Quartey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2 조를 :

“ICN의 설립취지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상병자를 돌보는 데 미치는 간호의 기여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공동관심사를 위해 각국간호협회에 대체를 제공하는 것이다”로 수정하자는 안” 통과

Puerto Rico의 Mrs. Ruth Perez에 의해 제안되고 Switzerland의 Miss Elfriede Schlaeppli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3 조(4)를 :

‘간호원의 전문적,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국 간호협회를 돕기 위함’으로 수정하자는 안” 통과

Argentina의 Miss Adriana Pecoroff에 의해 제안되고 Bermuda의 Mrs. Audra Mitchell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4 조(1)을 :

‘각국 간호협회의 조직을 강화하도록 돕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문과 지지를 한다’로 수정하자는 안” 통과

Mrs. Faamanatu Nielsen에 의해 제안되고 Liberia의 Ms. Carolyn Wilson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4 조(5)를 :

‘간호의 발전과/또는 간호원의 복지에 기여하는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과 신탁을 접수하고 운영한다’로 수정하자는 안”

통과

Jamaica의 Dr. Mary Jane Seivwright에 의해 제안되고 Ghana의 Mrs Edith Quartey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4 조는 수정된 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Senegal의 Mr. Ousmane Fall에 의해 제안되고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5 조는 수정된 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Ghana의 Mrs. Edith Quartey에 의해 제안되고 Senegal의 Mr. Ousmane Fall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6 조 3항(e)를 :

‘ICN의 정관, 정책, 입장과 성명등의 개정을 위한 안을 CNR에 상정하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로 수정하자는 안” 통과

Trinidad and Tobago의 Mrs. Laurel McDowell에 의해 제안되고 한국의 김모임박사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6 조 4항을 :

‘회원국은 회비의 체불이 없는 경우 ICN차기 이사회 3개월전에 이사회에 문서로 통고하므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회원국은 이사회에 공식적인 통보를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회원의 권리와 책임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로 수정하자는 안” 통과

Netherlands의 Miss J.M. Th. van Maanen에 의해 제안되고 Spain의 Mr. Enrique Rodriguez Gomez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6 조 2항(3)을 :

‘이사회는 회원국이 서면으로, 또는 회원국이 원한다면 위원회에서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로 수정하자는 안” 통과

Sweden의 Mrs. Ulrica Crone에 의해 제안되고 Ghana의 Mrs. Edith Quartey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6조 2항(6)을 :

‘출석이사 투표결과 2/3의 찬성이나 서면투표로써 이사회는 회원국의 제명을 CNR에 제외한다’로 하자는 안” 통과 (1명 기권)

Austria의 Miss Friederike Dittrich에 의해 제안되고 Fiji의 Mrs. Lavenia Kau Padarath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6조 2항, (7)과 (8)은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1명 기권)

Israel의 Mrs. Moriah Galili에 의해 제안되고 Philippines의 Mrs. Henedina Suanes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6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1명 기권)

Finland의 Miss Toini Nousianen에 의해 제안되고 Sweden의 Mrs. Ulrica Crone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7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United Kin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제안되고 Canada의 Miss Helen Taylor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9조 1항(c)를 :

‘이사는 CNR회의에 참석해야 하나 투표권은 없다/단, 회장은 선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결인 경우에 결정투표를 할 수 있다’로 하자는 안”

“새로운 조항(d)

‘국가대표가 이사회 임원이 될 때 CNR에 대리 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리대표는 ICN의 간호원에 대한 정의에 합당한 간호원이어야 하며 회원국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를

도입하자는 안”

“현재의 조항(d)는 (e)로 문자화시키자는 안” 통과 (1명 기권)

Kenya의 Mrs Elizabeth Ngugi에 의해 제안되고 Ghana의 Mrs. Edith Quartey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9조 3항(a)는 현 정관대로 하자는 안” 통과 (2명 기권)

Norway의 Mrs. Martha Quivey에 의해 제안되고 Fiji의 Mrs Lavenia Kau Padarath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 9조 3항(b)와 (f)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제안되고 Canada의 Miss Helen Taylor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0조 4항을 :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위원이 된다. 회장은 이사회와 CNR회의를 사회한다. 그러나 일을 수행할수 없을 때는 선임권에 의해 부회장에게 이를 위임한다’로 하자는 안” 부결

USA의 Mrs. Babara Nichols에 의해 제안되고 Jamaica의 Dr. Mary Jane Seivwright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0조 4항을 :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며 모든 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위원이 된다. 회장은 모든 이사회와 CNR회의를 주재한다. 부회장은 서열에 따라 회장의 부재시나 직무이행불능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통과

Kenya의 Mrs. Elizabeth Ngugi에 의해 제안되고 Denmark의 Mrs. Kirsten Stallknecht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0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Netherlands의 Miss J.M.Th. van Maanen에 의해 제안되고 Philippines의 Mrs. Henedina Suanes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1조 2항(g)를 :

‘상임위원회 위원, 전문사업위원회 위원을 선거하기전, 각 회원국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로 하자는 안과

새로운 조항(h)

‘특별위원과 그 위원장을 임명하여 모든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처를 취한다’를 삽입하자는 안”

통과

Denmark의 Mrs. Kirsten Stall knecht에 의해 제안되고 Fiji의 Mrs. Lavenia Kau Padarath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1조 2항(n)을 :

‘ICN의 행정책임자인 사무총장은 간호원으로써 회원국 간호협회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사회는 사무총장의 보수를 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결정한다’로 하자는 안”

통과

Trinidad and Tobago의 Mrs. Laurel McDowell에 의해 제안되고 Cyprus의 Mrs. L.P. Chacallie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1조 4항(c)를 :

‘임기중 연속 3번 결석하면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받게된다’로 하자는 안”

통과

Netherlands의 Miss J.M.Th. van Maanen에 의해 제안되고 Greece의 Miss Stavroula Papamicroulie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1조 4항(d)를 :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한 사업은 서신, 전화 및 전신에 의해 실행할 수 있으며 차기 정기 이사회에서 이를 비준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안”

통과

Liberia의 Ms. Carolyn E. Wilson에 의해 제안되고 Zambia의 Mrs. Eva Sanderson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1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Senegal의 Mr. Ousmane Fall에 의해 제안되고 Sierra Leone의 Mrs. Rosalind Claudius-Cole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2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Botswana의 Mrs. Margaret Motsepe에 의해 제안되고 Japan의 Miss Fumie Kobayashi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3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한국의 김보임박사에 의해 제안되고 Norway의 Mrs Martha Quivey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4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Germany의 Mrs. Rosemarie Weinrich에 의해 제안되고 Greece의 Miss Stavroula Papamicroulie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5조 2항을 :

‘이사회 임원과 이사의 선거는 비밀투표로 행해지며 각국의 정대표(혹은 대리인)는 투표권 1표를 가진다’로 하자는 안”

통과

Trinidad and Tobago의 Mrs. Laurel McDowell에 의해 제안되고 Tanzania의 Miss Eveline Zablon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5조 4항을 :

‘모든 투표용지는 6개월간 보존되며 이 시기가 끝나면 이를 폐지한다’로 하자는 안”

통과

Denmark의 Mrs. Kirsten Stallknecht에 의해 제안되고 Fiji의 Mrs. Lavenia Kau Padarath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5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Brazil의 Mrs. Ieda Barreira e Castro에 의해 제안되고 Sweden의 Mrs. Ulrica Crone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6조를 :

‘정관은 CNR 참석투표자 2/3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정관개정안은 각 회원국이 이사회에 제의하므로써 그 안이 CNR에 제출되며 또한 이사회가 CNR에 개정안을 제출할수도 있다. 제안된 모든 개정안은 차기 CNR회의 개최전 적어도 12개월내에 ICN본부에 통보되어야 한다.’로 하자는 안” 통과

Argentina의 Miss Adriana Pecoroff에 의해 제안되고 Zambia의 Mrs. Eva Sanderson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7조는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Denmark의 Mrs. Kirsten Stallknecht에 의해 제안되고 Greece의 Miss Stavroula Papamicrouli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8조(1)을 :

‘각 지역마다 회원국 1/3 이상이 이사회에서 면으로 해산을 권고할 때 그 효력이 있다.’로 하자는 안” 통과

Germany의 Mrs. Rosemarie Weinrich에 의해 제안되고 France의 Mrs. Christiane Allaire에 의해 재청됨.

“정관 제18조(5)를 :

‘부채에 대한 완납 및 ICN직원, 이사 및 위원회 위원의 봉급을 지급한 나머지 재산과 현금은 前회계년도에 납부한 회비에 비례하여 각 회원국에 분배한다’로 하자는 안”

통과

Argentina의 Miss. Adriana Pecoroff에 의해

제안되고 Ethiopia의 Sister Emawayish Gerima에 의해 재청됨.

“ICN헌장은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안”

통과

의제 17.1 :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각국 간호협회
회를 위한 지침

Canada의 Miss Helen Taylor에 의해 제안되고 Australia의 Miss Moira McNair에 의해 재청됨.

“본 주제에 관하여 설명적인 실례를 첨부한 제 2의 문서를 만들기 전, CNR에 의해 채택된 ‘기계에 의존한 생명의 유지, 생명의 중절 유전학적 상담과 이러한 사항에 내포되는 도덕적 딜레마 등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각국 간호협회를 위한 지침’을 각국 간호협회에 회람하도록 하자는 안” 통과 (1명 반대)

의제 17.2 : ILO 규정 149의 비준

Gambia의 Mr. Ebrima Marenah에 의해 제안되고 Germany의 Mrs. Rosemarie Weinrich에 의해 재청됨.

“각국 정부가 ILO 규정 149와 제의안 157을 비준하는 데 각국 간호협회가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서한을 ICN이 모든 회원국 혹은 이를 필요로 하는 회원국에 보내자는 안” 통과

의제 17.3 : 건강에 대한 간호의 기여도 증진

United Kingdom의 Miss Eirlys Rees에 의해 제안되고 Sierra Leone의 Mrs. Rosalind Claudius-Cole에 의해 재청됨.

“CNR의 이번 회의는 1981년 초까지 간호사 업국장을 제정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모든 정부에 촉구한다. 회원국과 ICN임원은 이 모형적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해 줄 것을 기대하며 모든 정부는 WHO와 같은 국제단체에 대표단을 보낼 때 간호원을 전임대표로 임명을 촉구하자는 안” 부결

Botswana의 Mrs. Margaret Motsepe에 의해 제안되고 Ethiopia의 Sister Emawayish Gerima에 의해 재청닐(부록 F)

통과 (1명 반대, 10명 기권)

Liberia의 Ms. Carolyn Wilson에 의해 제안되고 Bahamas의 Mrs Esmeralda Ratherford에 의해 재청닐.

“ICN이 개최하는 각종 국제적 모임에 각국 간호협회 대표의 참석을 용이하게 하고, 그외의 다른 국제보건관계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단에 각국 간호협회의 참여를 증진 시키기 위해, ICN은 간호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써 각국 보건부를 통해 정부에 협조를 구하자는 안”

통과 (3명 기권)

<부록 A>

국제여행의 증가로 인한 질병전염의 위험에 대한 간호원의 책임에 관한 성명서

지난 20년사이에 국제여행은 놀랄만큼 증가되었다. 여행자의 수뿐만 아니라 그 연령층과 사회경제적배경이 다양해졌고 여행자가 속한 국가의 수도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되어 질병전염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이는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호원은 보건종사자 중의 대다수가 간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간호원은 국제여행으로 발생되는 질병전염의 위험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부를 보조하는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책임과 전략적위치에 놓여있다.

이에, ICN은 각국 간호협회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국제여행으로 발생되는 질병전염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기구에 간호

원이 파견되어 참여하도록 한다.

—국제적으로 중요시된 전염병의 효과적인 감시, 예방및 조기발견과 치료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다.

(이에 관련된 질병은 국제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항목에 속한 질병뿐 아니라 질병의 잠복기에 의거하여 지역적으로 혹은 일부국가간에 전염이 야기되어 심각한 경제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질병, 예를들면, 음식과 공기에 의한 전염병 곤충이나 생물에 의한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 질병등이다.)

각국 간호협회는 경험에 의해 얻은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여 직업적 사명감을 완수하기 위해 하기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국제여행의 속도와 회수가 증가됨에 따른 질병전염의 위험증가에 대하여 간호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경제태세를 일깨우도록 한다.

—국제여행에 관련된 소속국의 법률과 검역규칙을 알린다.

—기초 교육과정과 단기연수과정, 계속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본 의제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그러므로써 질병전염의 적절한 통제 및 해결에 있어서 간호원이 참여할 가능성과 질을 높인다.

<부록 B>

기계에 의존한 생명의 유지, 생명의 종질, 유전학적상당과 이러한 사항에 내포되는 도덕적 딜렘리등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침서

이 성명서를 마련한 목적은 각국 간호협회가 회원에게 본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때 참작할 특정요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윤리적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야기된 문제는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지역적인 요소들 고

려 하여야 한다.

이런 때 간호원은 윤리적 문제가 포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으며 자신이 수행하는 건강간호사로서의 역할, 건강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간호협회의 회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등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역할로 인해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

기계에 의존한 생명의 유지, 생명의 증절, 유전학적 상담과 이러한 사항에 내포되는 도덕적 딜레마등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토의할때 각국 간호협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각국 국민간에 종교적 문화적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 생명의 유지, 생명의 증절 및 유전학적 상담에 관한 그 나라의 국가법
- 건강간호전달체계의 변화, 즉,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개인에 의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향.
- 건강간호전달체계에 있어서 인력 및 재정적 우선순위 결정자의 자세에 대한 간호원의 영향력.
- 사회적, 법적 및 정치적으로 연관있는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간호원의 영향력.
- 사회정치적 집단이나 직업적 집단, 사회 혹은 정부의 조직의 가치체제와는 다른 가치체제를 갖는 국가협회.
- 봉사요구에 대비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간호원의 책임.
- 건강요구를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인식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충족된 건강요구중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인식하도록 사회를 도울 간호원의 능력.
- 간호원 및 건강종사자들의 직업적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완전하게 이해시키므로써 기능을 효과적이고 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과정 및 계속교육에 윤리적 문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
- 간호원이 흔히 겪게 되는 갈등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 대해 토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문하는 일.

〈부록 C〉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성명

1979년은 유엔총회에서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헌장을 선포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헌장은 모든 어린이는 행복한 어린시절을 향유할 수 있으며 다음 원칙에 의해 기술된 자유 권리와 그 어린이가 속한 사회의 행복이나 자신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선언된 것이다.

1. 모든 어린이는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의 국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지 혹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해 구별됨이 없이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
2. 모든 어린이는 고귀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어린이는 태어날 때 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다.
4. 모자는 적당한 산전, 산후 간호를 포함한 특별한 간호와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적절한 영양의 섭취, 오락, 주거 및 건강봉사 받음 권리가 있다.
5.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불구가 된 어린이는 특별 치료, 교육 및 간호를 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물질적, 도덕적으로 안정되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속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성장해야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며, 어느 곳에서나 어린이는 부모의 책임아래에서 보호 받고 성장해야 한다. 사회나 공공기관은 가족이 없거나 부양받을 적당한 방법이 없는 어린이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어린이에게 개인적능력, 판단, 도덕심, 그

리고 사회적책임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기초단계의 의무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등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뛰어 놀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8. 어린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먼저 안전과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중에 포함된다.

9.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무관심, 잔악행위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어떤 형태의 매매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적절한 최소고용연령이 설정되어야 하며 건강과 교육상으로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 어린이를 고용할 수 없다.

10. 어린이는 종족적, 종교적 혹은 다른 형태로 차별되게 성장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관용과 우애와 평화 그리고 인류에 대한 책임감속에서 성장되어야 한다.

어린이 권리에 대한 헌장은 부모, 개인으로서의 남과 여, 자발적기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고 법적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해 준수되기를 요구했다.

UN총회는 어린이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제 사회적 발전에 대해 이러한 특별 요구가 갖는 각종계획의 관계를 위해 1979년을 세계 어린이의 해로 선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계 어린이의 해는 각 국가가 그 나라의 어린이 행위에 관해 노력을 증진하고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결의사항 I

ICN은 세계 어린이의 해 선포가 어린이 권리에 대한 헌장을 지지하며 각협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자발적 기구와 함께 그들의 노력에 의해 원칙이 선포되어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결의사항 II

ICN 회원국은 회원국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어린이 문제에 대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지원하고 참여한다.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어린이 보호

—가정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고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하고 보호 받는 곳이 되도록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킴.

—모든 어린이가 적당한 영양, 주택, 교육 그리고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들뜸과 봉사의 동등한 분배 제공.

—질병과 불구의 예방에 중점을 둔 일차건강체제 육성.

—고아나 기아들에 대한 특별한 간호나 보호의 수단과 일양에 대한 장벽 제거.

<부록 D>

질적인 생활에 관한 설명

세계는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자원의 고갈등으로 장래의 인간의 질적인 생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직면하고 있다. 인류에 대한 봉사의 질과 본질은 경제적압력에 의해 변질될 수 있다.

결의사항

ICN은 각 회원국을 통하여 다음 원칙이 인식되고 실행되어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간호봉사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해 일차적인 대변자가 된다.

—간호원과 다른 의료제공자들의 학교교육은 그 건강사업이 수행되는 시대와 환경에 의해 요구되는 과학적, 윤리적 범위를 포함한다.

—사회는 빈곤, 적절한 주거지부족, 해로운 환경요인으로 부터 개인의 특별한 환경에 따라 개인을 보호하므로써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건강사업의 초점은 질병이나 불구로 부터와 보호 치료와 재활 혹은 임종기나 사망과정에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적 요구에 둔다 건강사업을 제공하는 사람, 특히 간호원은 치료과정과 치료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내려도 록도우며 이를 개인과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전문적 책임을 지며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지해 주므로써 개인

의 권리를 존중해 준다.

—연구나 과학기술의 결과는 환자나 기타 건강사업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다

〈부록 E〉

“간호실무에 있어 임상 전문간호원 그룹

지난 20년동안 간호연구 및 대학원 교육의 결과로 간호의 여러분야에 걸쳐 간호실무, 전문지식 및 임상학술지등에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기초간호교육과정을 통해 얻어진 바, 보다 발전된 형태로, 즉, 간호실무는 ‘임상전문가’, ‘건강간호사’, 그리고 ‘임상간호전문가’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근래 간호원들은, 지역사회간호, 내외과 간호, 정신과간호, 응급간호, 수술실간호, 소아과 간호와 같은 제분야에 있어서, 대학교육, 계속교육의 결과 이든지 특별간호분야의 실무경험의 확장이든지 간에 임상적 관심을 서로 교환하고 같은 관심을 가진 동료 간호원들과 협의하고자 점차 노력하고 있다.

임상적인 것에 관심있는 간호원은 때때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특별임상간호분야에 적절한 이론, 실습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토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조직체로서 형성된 특별집단을 찾는다.

이런 특별집단은 보다 나은 지적, 임상적, 전문적 능력을 자극하게 하고 간호실무의 분야에 관련된 정책과 문제를 토론할 매체를 제공하며 일반적 관심에 있어서 간호의 발전을 증진시킨다.

간호협회는 간호와 간호직의 발전을 통하여 건강보호를 개선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성과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다.

ICN의 각 회원국은 각 회원국의 보호아래 있는 조직의 범위 내에서 임상적관심집단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부록 F〉

간호의 건강사업기여도의 증진

간호는 모든 나라의 국민을 위한 건강사업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나라에 있어 간호원은 의원, 보건소등 건강사업직에 완전한 책임을 맡고 있다.

간호는 환자의 질적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모든 수준의 환자와, 간호원의 접촉을 통해서 건강사업의 질을 추구하는 일차적 건강관리자 맡겨져 있다.

건강사업전달체도와 중요한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토의하게 되는 WHO회의에 참석토록 초청되는 사람은 극소수의 국가간호원에 불과하다.

간호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 ICN은 WHO와 공식적관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나라의 보건부는 ICN 결정을 존중한다.

1. ICN은 WHO와의 협의하에 WHO의 기술적 문서와 전문위원회 보고서를 보건부 간호사업국에 보낸다.

2. ICN은 보건부가 WHO회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간호원 대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써 간호원들은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공헌하며 국가수준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 공헌할 수 있게 된다.

3. 간호지도자들을 전문적으로 완전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보건부에 제안한다.

—보건부내에 상위직(간호사업국장 또는 동등의 직위)을 설치한다.

—계획, 목표설정, 우선순위설정 시행 및 사업효과의 평가등 건강관리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간호지도자를 포함시킨다.

—간호실무, 교육, 입법, 연구등 간호원 자신의 직업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있어 간호원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